

일반대학원 2026-2학기  
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 신청안내



한양대학교 대학원



202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

##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 안내

### 신청/서류제출 기간 및 지원자격

- 지원자격
  - 석·박사통합과정 해당 **재학생**
  - 4기 이상 이수 후 휴학자는 복학 후 1학기가 경과한 후, 석·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 가능
  - ※ 석·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 시, 직전학기 재학생이어야 함
-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: **2026. 7. 6.(월) 10:00 ~ 7. 10.(금) 17:00**
  - 위 기간 중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.
  - **우편접수의 경우, 7. 10.(금) 17: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**됩니다.

### 신청방법

- ① 한양인(HY-in) 로그인
- ② 로그인 후 상단메뉴 **[신청] → [학적변동] → [석박통합과정변경]** 선택
- ③ 해당화면에서 **“변동구분 :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”, “변동사유”** 입력
- ④ “출력” 버튼을 클릭하여 포기신청서 출력 (본인, 지도교수, 학과주임교수 서명/날인 필요)
- ⑤ “포기신청서” 및 추가 제출서류를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

### 제출서류

-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 신청서 (HY-in 포기신청서 출력 후 서명) 1부
- 성적증명서 (원본) 1부
- 장학금수혜관련확인서 1부
  - 서류양식 : 대학원홈페이지 자료실 “학적” #12
- (해당자에 한하여) 장학포기신청서 1부
  - 서류양식 : 대학원홈페이지 자료실 “장학” #30

※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 신청시 2+4 석·박사통합장학금 수혜자의 등록금 환불제도는 폐지되었음(2019. 1. 16.)



## 제출방법

- 제출장소 : 일반대학원 대학원교학팀 (신본관 4층 412호) T. 02-2220-0225, 0224
- 제출시간 : 제출기간 중 10:00 ~ 17:00 (토, 일 제외)
- 우편주소 : (04763)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교학팀(신본관 4층 412호)

※ 우편접수의 경우, 7. 10.(금) 17: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
## 유의사항

-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 이후 석사과정 입학생과 동일한 자격이 됨
  - 석사 수료요건 충족 시 석사과정 수료 처리되며,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합격하고 논문을 통과할 경우 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.
-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에서 박사논문연구1을 듣고 포기한 경우, 석사논문연구 이수는 불가능합니다. (연구필수는 이수 학점수로 이수 여부를 판정)
- 우수석박사통합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 시 남은 학기 동안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(석사과정 자대생(HY-in) 장학금으로 전환 불가)
-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전환 후 다시 포기하는 경우, 전환 전에 석사 종합시험 합격했다더라도 포기 후 다시 합격해야 합니다.

## 결과확인

-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 결과 확인일 : 2026. 7. 16.(목) 예정
  - MY홈의 학생포드폴리오 내 “학적변동”에서 확인 가능
  - SMS, e-mail 발송예정



##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 시 장학금 환불 변경사항 (2019-2학기부터)

### •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 시 장학금 환불제도 폐지 (2019. 1. 16. 시행)

#### 「2+4 석·박사통합장학제도」 폐지에 따른 수혜 장학금 환불제도 폐지 안내

- 2019. 1. 16.자로 「2+4 석·박사통합장학제도」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수혜 시 의무사항이었던 연구결과물 제출의무도 면제됨
- 따라서 연구결과물 제출 미 이행 시 (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 포함)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는 제도도 폐지됨  
(다만, 포기 시 석·박사통합과정 장학도 중지됨)
- 2019학년도 2학기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 포기자부터 적용하며, 기존 포기자(장학금 환불자)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

### • 관련근거

#### (1) 일반대학원 우수석박사통합장학 내규 (2019. 1. 16. 공포)

부칙 제2조(석박사통합과정 2+4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

- ② 기존 석박사통합과정 2+4제도 수혜자로 6기까지 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본 내규를 적용하며,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.

#### (2) 교내연구사업 폐지 안내 (서울 연구진흥팀 H6120-2018-2649, 2019. 1. 25. 시행)

4.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

나. 수료생 :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

#### (3) 석박사통합과정 2+4 지원사업 폐지 안내 (ERICA 연구진흥팀 Y6108-2019-387, 2019. 4. 24. 시행)

4.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

가. 수료생 :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